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중랑 제4선거구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전석기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 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,

건축법, 건축물관리법,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 
위임사항을 개정하고,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 
있습니다.

○ 먼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기존 ‘건축사’ 뿐만  
아니라 ‘건설기술용역사업자’ 도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를 수행할  
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, 건축법 유지관리조항 삭제 및  
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.

- 또한 건축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화재 및 피난 등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건축 구조·시공방법이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시장·구청장이 검사해야함에 따라, 법령의 위임에 맞추어 검사대상과 검사주기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이 기존 이행강제금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와 과태료까지 확대된 바, 이를 해당 조문에 반영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